

## 시정촌 자살대책계획 수립 지침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발표 후생노동성 (2017년 11월)

번역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JSSC)

### 【들어가면서】

일본의 자살대책은 2006년에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의 문제」였던 자살이 「사회의 문제」로서 널리 인식하게 되었고, 자살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살자 수가 연간 감소 추이를 보이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주요 선진 7개국 중 가장 높고 자살자 수는 매년 2만 명을 웃도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비상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살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대책의 시행 10년째를 맞이하는 2016년에 자살대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살대책이 「삶을 위한 포괄적 지원」으로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에 명시함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으로서 누구든지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자살대책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도도부현(시구읍면·광역자치단체) 및 시정촌(시읍면·기초자치단체)이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또는 「시정촌 자살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정촌에서 수립되는 「시정촌 자살대책계획」이 해당 시정촌의 자살대책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시정촌의 모든 사업 중에서 「삶을 위한 지원」 관련 사업을 총동원하여, 다시 말해 현존하는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수립된 시정촌의 자살대책계획은 모든 관청을 아우르는 노력으로서 해당 시정촌의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의 시정촌이 이를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자살대책도 더욱 크게 발전될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2017년 7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자살종합대책대강 중, 「정부는 원활한 자살대책계획의 도움을 주기 위한 자살대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정촌 자살대책계획」의 수립에 관한 표준적인 방법론과 유의점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살대책의 기본 방침」 등, 그대로 가져다가 시정촌 자살대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upplementary Information for Suicide Countermeasures for Attempted Suicide Survivor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Suicide Policy Research 2018; 2:1-7)

I 자살대책계획 수립의 배경

I-1 일본의 자살대책이 목표로 하는 것

자살은 대부분의 경우 궁지에 내몰린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자살 배경에는 정신보건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과로, 빈곤, 육아 및 개호로 인한 피로감, 집단 따돌림이나 고립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살에 이르는 심리는 다양한 고민이 원인이 되어 궁지에 내몰린 결과, 자살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사회와의 유대감 감소, 살아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역할 상실감, 또한 주어진 역할의 크기에 대한 과잉 부담감이 위기 상태까지 내몰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살로 내몰리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자살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및 그 외의 관련 시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삶을 위한 포괄적 지원」으로서 실시되어야 합니다(자살대책기본법 제 2 조). 자살대책기본법은 제 1 조에서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자살 방지를 도모하며, 아울러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살대책은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뿐인 개인으로서 존중 받는 사회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표 1: 자살의 위기요인 이미지(후생노동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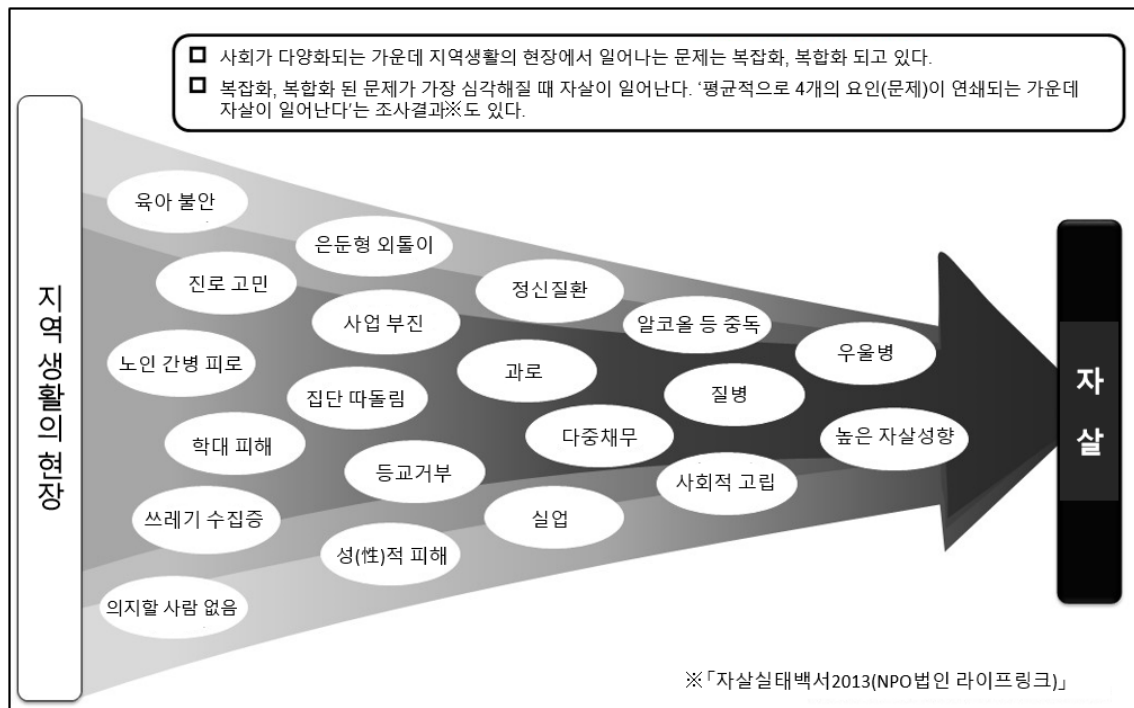


도표 2: 일본의 자살자 수 추이 (2017 년판 「자살대책백서」 제 1-1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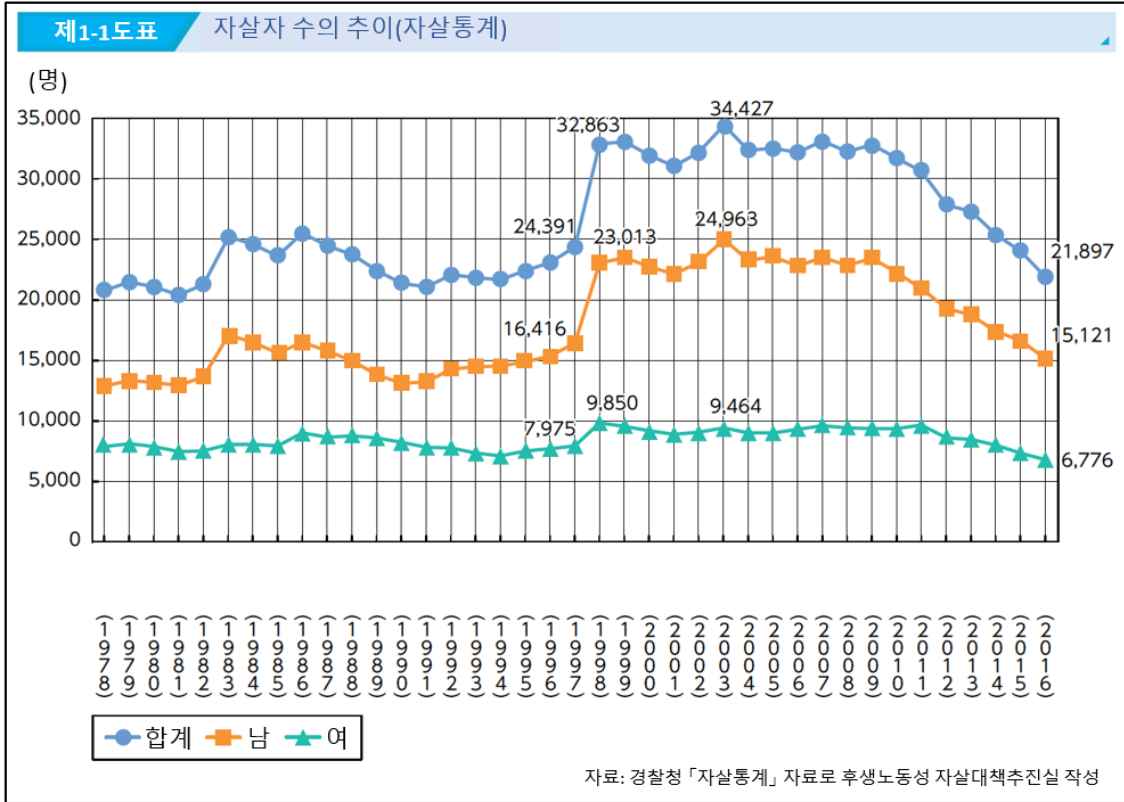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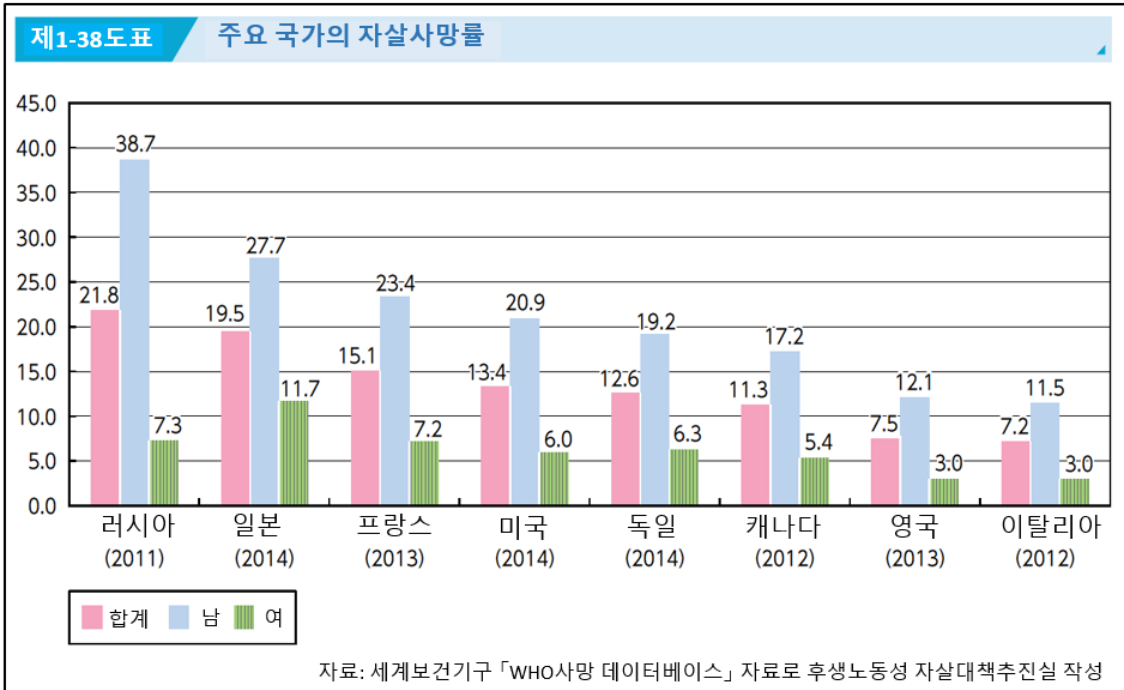


도표 3: 자살사망률의 국제 비교 (2017 년판 「자살대책백서」 제 1-38 도표)



## I-2 자살대책의 기본 방침

2017년 7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자살종합대책대강에서는 자살종합대책의 기본 방침으로서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1)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추진

개인이든 지역이든, 자기 긍정감과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위기회피능력 등 「삶의 촉진요인(자살의 보호요인)」 보다, 실업과 다중채무, 생활고 등 「삶의 저해요인(자살의 위험요인)」 이 높을 때 자살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살대책은 「삶의 저해요인」 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삶의 촉진요인」 을 늘리는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양면적 방안을 통해 자살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 방지 및 유가족 지원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의 자살대책 뿐만 아니라 「삶을 위한 지원」 과 관련된 지역의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관련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 전개

자살로 궁지에 내몰리는 사람이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하고,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관점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인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책, 사람 및 조직이 밀접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 요인이 될 수 있는 빈곤,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 은둔형 외톨이, 성적 소수자 등 관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통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계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삶을 위한 지원 관계자가 각각 자살대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공생사회의 실현방안 및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등과의 연계 추진, 정신과 의료, 보건, 복지 등, 각 시책의 연동성을 높임으로써 누구든지 적절한 정신보건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대응 단계에 따른 각 레벨에 맞춘 대책의 효과적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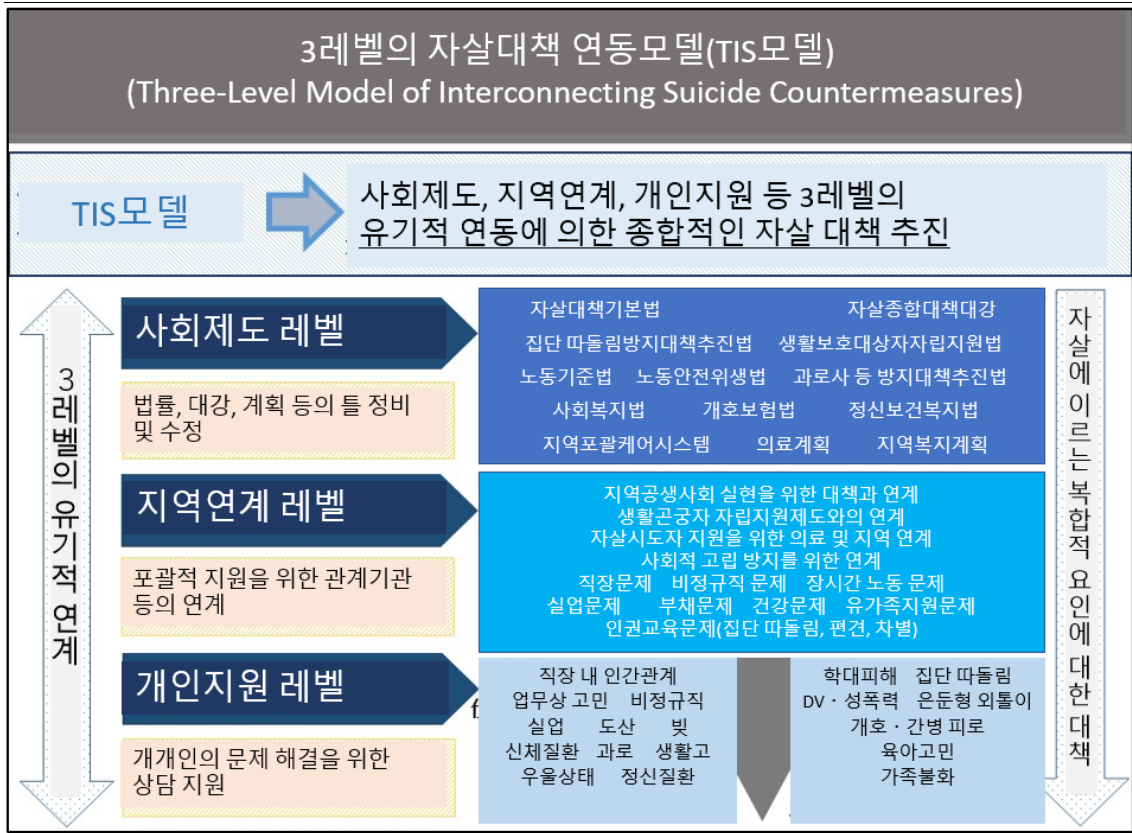
나아가 자살대책은 사회 전체의 자살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인지원 레벨」, 「지역연계 레벨」, 「사회제도 레벨」 을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터전을 원점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인지원을 강화」 하고, 「개인지원의 강화 등에 필요한 지역연계를 촉진」 하며, 나아가 「지역연계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회제도를 정비」 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서 연동시키고자 하는 구상(3레벨의 자살대책 연동모델)입니다.

또한 시계열적인 대응책으로서 자살 위험성이 낮은 단계에서의 계몽활동 등 「사전 대응」 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자살 발생 위험에 개입하는 「위기 대응」 및 자살과 자살시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사후 대응」 등 각각의 단계에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살의 사전 대응 보다 앞선 단계의 대책」 으로서 학교에서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SOS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표 4: 3 레벨의 자살대책 연동모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자료)



4) 실천과 계몽을 양대 축으로 추진

자살로 공지에 내몰리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기」지만, 위기에 빠진 사람의 심정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 문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심정과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위기에 빠진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역 전체의 공통 인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계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바로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살 고민자의 신호를 빨리 눈치채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치료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교육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5) 관계자의 역할 명확화 및 관계자에 의한 연계 및 협동의 추진

일본의 자살대책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여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 기업, 국민 등이 연계 및 협동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각의 주체가 담당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유하며 상호 연계 및 협동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실시」 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공공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른 시책을 정하여 실시」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단체와 민간단체, 기업은 각각의 활동 내용의 특성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살대책에 참여」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또한 자살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내 문제의 일임을 인식하고,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자살대책에 참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3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살대책

#### 1) 자살대책기본법 제정 등

일본에서는 1998 년에 자살자 수가 급증할 때까지 자살 문제가 행정상의 과제로 크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자살대책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의 기본 방침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서는 후생노동성의 우울증 대책과 직장 내 정신건강대책을 중심으로 각각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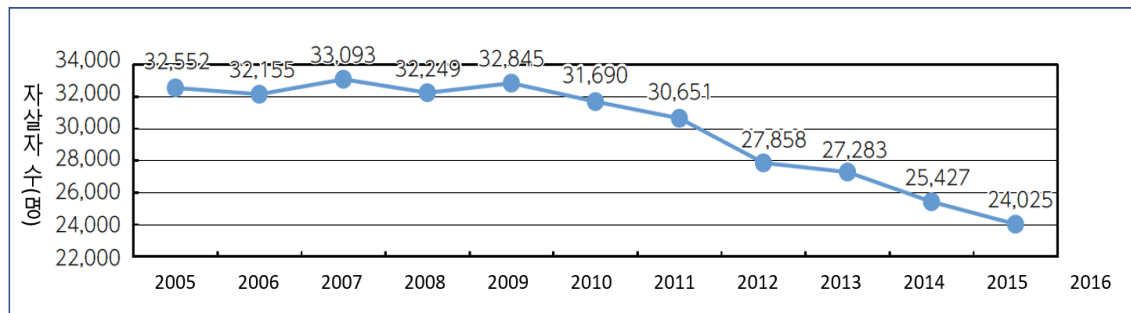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예방활동과 유가족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를 대상으로 한 자살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국회에서도 2005 년 7 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자살에 관한 종합대책의 긴급하고도 효과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 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의를 수용하여 정부는 12 월에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에 대하여」 를 작성하여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초당파인 「자살방지대책을 생각하는 의원 유지(有志)의 모임(현재는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 모임」 으로 개명)」 이 결성되어 「자살대책의 기본 법안」 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6 월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자살대책기본법으로서 같은 해 10 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자살대책기본법 시행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는 즈음에 자살대책의 관련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살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0 년 간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살대책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2015 년 6 월에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자살종합대책을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 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법안의 검토는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2016 년 3 월에 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같은 해 4 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도표 5: 일본의 자살대책을 둘러싼 주요 동향 (출처:2016 년판 「자살대책백서」 )



2005년 5월	민간단체와 의원유지가 공동으로 자살대책심포지엄 개최
7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자살에 관한 종합대책의 긴급하고도 효과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
12월	자살대책 관계부처 연락회의에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정리
2006년 5월	민간단체가 「자살방지를 생각하는 의원 유지의 모임」에 「자살대책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
6월	민간단체가 「법제화를 요구하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 「자살대책기본법」 성립(만장일치 가결)
2007년 4월	내각부 자살대책추진실 설치
6월	「자살종합대책대강」 각료회의 가결
9월	처음으로 「자살예방주간」 실시
11월	처음으로 「자살대책백서」 각료회의 가결
2008년 5월	민간단체가 「자살실태백서2008」 발표(내각부 특명담당 대신에게 전달)
10월	「자살대책 가속화 플랜」 결정(자살종합대책회의) 「자살종합대책대강」 일부 개정
2009년 5월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역자살대책 긴급 강화 기금」
11월	「자살대책 100일 플랜」 발표(자살대책 긴급전략팀)
2010년 2월	「생명을 살리는 자살대책 긴급플랜」 결정(자살종합대책회의)
3월	처음으로 「자살대책강화의 달」 실시(수면 캠페인 등) 내각부 본부참여에 의한 「자살 위험요인분석」 발표
4월	「지역의 자살 기초자료(상세자료)」 공개 개시
2011년 6월	동일본 대지진 관련 열혈 자살자 수 파악 개시
11월	「지역자살대책 긴급 강화 기금」 추가 편성
2012년 3월	「요리소이 핫라인」 전국 운용 개시
8월	「자살종합대책대강」 재검토
2013년 2월	「지역자살대책 긴급 강화 기금」 추가 편성
10월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의원모임 출범
11월	의원모임 「자살대책에 필수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긴급요청」
2014년 2월	「지역자살대책 긴급 강화 기금」 추가 편성
6월	의원모임 「젊은층 자살대책에 관한 긴급요청」
2015년 2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5월	민간단체와 의원유지가 공동으로 「자살종합대책을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의원집회」 개최
6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자살종합대책을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
2016년 3월	「자살대책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성립(만장일치 가결)
4월	자살대책추진업무가 후생노동성으로 이관 2016년도 당초예산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 2) 정부의 추진 체제 강화

자살대책기본법에 기초하여 2006년 10월 내각관방장관을 회장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는 관계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살종합 대책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각 부처에 걸친 자살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에는 내각부에 자살대책추진실이 설치되어, 자살종합대책회의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1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내각관방 및 내각부의 업무의 재검토에 대해서」를 통해 자살대책 추진업무를 후생노동성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대책을 중심으로 한 자살대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대책마련 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 이관에 따라 자살종합대책회의의 회장을 후생노동대신이 역임하고, 사무국도 후생노동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현재 회장 외 10명의 국무대신(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금융),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소비자 및 식품 안전), 부흥대신,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과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2016년 4월 1일에 후생노동성에 자살대책추진실이 설치되어 내각부가 담당해 온 사무를 승계하였습니다. 같은 날 후생노동대신을 수장(리더)으로 하는 「자살대책 추진 본부」가 설치되어 다양한 분야의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 의료, 복지, 노동 및 그 외 관련 시책의 유기적 연계를 꾀하고 부처 횡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대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홍보, 조사 연구, 연수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는



2012년 8월에 처음으로 전체적인 재검토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의 자살대책기본법 개정의 취지 및 일본의 자살실태를 바탕으로 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2017년 7월 「자살종합대책대강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자살종합대책의 기본 이념 및 기본 방침 등이 정리되어, 당면한 중점시책으로서 「지역 차원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지원 강화」, 「아동과 젊은층(만 39세)을 위한 자살대책의 강화」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임을 재확인하되, 당면한 목표로서 「선진국의 현재 수준까지 감소」를 목표로 2026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15년과 비교해 30%이상 감소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도표 7

## 「자살종합대책대강」(개요)

※ 밑줄은 전 대강의 주요 변경 항목

2016년 자살대책기본법 개정 및 일본의 자살실태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

<h3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1 자살종합대책 기본이념</h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p style="text-align: center;">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한다</p> <p>➢ 자살대책은 사회에서 「<b>삶의 저해 요인</b>」을 줄이고, 「<b>삶의 촉진 요인</b>」을 늘림으로써 <b>사회전체의 자살 위험을 감소</b>시킨다</p> <p style="font-size: x-small; 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2px;">저해 요인: 과로, 생활공핍, 육아 및 간호 피로, 집단 따돌림 및 고립 등 촉진 요인: 자기 긍정감, 신뢰할 수 있는 인간 관계, 위기 회피 능력 등</p> </div> <h3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2 자살현황과 자살종합대책의 기본인식</h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p>➢ 자살은 대부분의 경우 궁지에 내몰린 결과로서의 죽음이다</p> <p>➢ 연간 자살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b>비상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b></p> <p>➢ 지역레벨의 실천적 대책 마련을 <b>PDCA 사이클을 통해서 추진</b>한다</p> </div> <h3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3 자살종합대책의 기본방침</h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b>으로서 추진한다</li> <li>2. <b>관련 시책과의 유기적 연계</b>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li> <li>3. <b>대응 단계에 따른 각 레벨에 맞춘 대책을 효과적으로 연동</b>시킨다</li> <li>4. 실천과 계발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li> <li>5.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민간단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그 연계 협동을 추진한다</li> </ol> </div>	<h3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4 자살종합대책의 당면 중요 시책</h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지역레벨의 실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지원</b>을 강화한다</li> <li>2.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빨리 발견하여 보호를 촉진한다</li> <li>3. 자살종합대책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한다</li> <li>4. 자살대책에 관한 인재확보,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li> <li>5. 마음의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정비와 마음 건강 만들기를 추진한다</li> <li>6. 적절한 <b>정신보건의료복지서비스</b>를 받도록 한다</li> <li>7. <b>사회전체의 자살 위험을 저하</b>시킨다</li> <li>8. 자살시도자의 거듭된 자살기도를 막는다</li> <li>9. 남겨진 사람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한다</li> <li>10. 민간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한다</li> <li>11. <b>아동·젊은층을 위한 자살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b>한다</li> <li>12. <b>근무 문제에 대한 자살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b>한다</li> </ol> </div> <h3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5 자살대책 수치목표</h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p>➢ 선진국의 현재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b>2026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15년과 비교해서 30%이상 감소</b> (2015년 18.5⇒13.0이하)</p> <p style="font-size: x-small; 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2px;">(WHO: 프랑스15.1(2013), 미국13.4(2014), 독일12.6(2014), 캐나다11.3(2012), 영국 7.5(2013), 이탈리아7.2(2012))</p> </div> <h3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제6 추진체제 등</h3>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의 추진 체제</li> <li>2. 지역의 <b>계획적인 자살대책 추진</b></li> <li>3. 시책의 평가 및 관리</li> <li>4. 대강의 재검토</li> </ol> </div>
---	--

#### 4) 지역자살대책강화 교부금에 의한 지원

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에서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자살대책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상황을 반영한 자살대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하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해 정부가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 14 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책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살대책을 마련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자살대책강화 교부금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표 8

## 자살종합대책의 당면 중점시책(포인트)

● 자살대책기본법 개정의 취지·기본적 시책 및 일본 자살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책 ※각 시책에 담당 부처를 명기 ※보조적인 평가지표 포함<예>:하라인 및 마음건강상담의 전화번호 통일에 대한 인지도

※ 밑줄은 전 대강의 주요 변경 항목

<p><b>1. 지역별의 실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살실태 프로파일, 지역자살 대책의 정책 패키지 작성</li> <li>· 지역자살대책의 계획 방안 가이드라인 작성</li> <li>· 지역 자살대책추진센터를 위한 지원</li> <li>· 자살대책을 위한 전문 직원 배치·전문 부서 설치등 촉진</li> </ul>	<p><b>2.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빨리 발견하고 보호를 추진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주간과 자살대책강화기간의 실시</li> <li>· 아동학상의 자살대책에 필요한 교육 실시(SOS를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추진)</li> <li>· 자살과 자살관련사건 등에 관한 올바른 지식 보급</li> <li>· 우울증 등에 대한 보급·개발추진</li> </ul>	<p><b>3. 자살종합대책추진에 기여하는 조사연구 등을 추진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의 실태나 자살 대책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조사 연구·검증성과 활용(현실적 자살 연구 추진 프로그램)</li> <li>· 선진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정보 수집, 정리, 제공</li> <li>· 아동·청소년 자살 조사</li> <li>· 사인 규명 제도와의 연동</li> <li>· 현장 사설의 형성 등에 의해 자살대책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집계·관리 분석</li> </ul>	<p><b>4. 자살대책에 관한 인재확보,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등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려오나 전문 학교와 연계하여 자살대책 교육 추진</li> <li>· 자살대책의 연계 조정을 담당하는 인재 양성</li> <li>· 담당직사의 자질 향상</li> <li>· 교육원에 대한 보급 개발</li> <li>· 지역보건·산업보건 인력의 자질 향상</li> <li>· 게이트키퍼의 양성</li> <li>· 가족과 지인 등을 포함한 지원자를 위한 지원</li> </ul>	<p><b>5. 마음의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정비와 마음 건강 만들기를 추진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에서의 정신건강대책을 추진</li> <li>· 지역의 마음 건강 만들기 추진체제 정비</li> <li>· 학교의 마음 건강 만들기 추진체제 정비</li> <li>· 대규모 재해 피해자의 마음 케어, 생활 자건 등을 위한 추진</li> </ul>	<p><b>6. 적절한 정신보건 의료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과 의료, 보건, 복지 등의 연동성 향상, 전문직을 배치</li> <li>· 정신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양성 등</li> <li>·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도박 중독 등의 고위험자 대책</li> </ul>
<p><b>7. 사회전체의 자살 위험을 저하시킨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인터넷이나 SNS) 등의 활용</li> <li>· 은둔형 외톨이, 아동 현대성범죄·성폭력 피해자, 생활 곤궁자, 원부모 가정, 성착수수에 대한 지원 증진</li> <li>· 임신부 지원의 증진</li> <li>· 상담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확보, outreach적·적극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li> <li>· 관계기관 등의 연계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인식</li> <li>· 자살대책에 필요한 마음의 안정적 만들기 추진</li> </ul>	<p><b>8. 자살시도자의 거듭된 자살기도를 막는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자살시도자 지원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 정비</li> <li>· 의료와 지역 연계 추진에 의한 포괄적인 시도자 지원 강화</li> <li>· 마음의 안정적 마련과 연동을 통한 지원</li> <li>·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원자에 대한 지원</li> <li>· 학교, 직장 등에서의 사후 대응 촉진</li> </ul>	<p><b>9. 남겨진 사람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족의 자조그룹 등 운영 지원</li> <li>· 학교, 직장 등에서의 사후 대응 촉진</li> <li>· 유가족 등의 종합적인 지원 요구에 따른 정보 제공 추진 등</li> <li>· 유가족 등에 대응하는 중장기관 직원의 자질 향상</li> <li>·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li> </ul>	<p><b>10. 민간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단체의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li> <li>· 지역에서의 연계체제 확립</li> <li>· 민간 단체의 상담 사업에 대한 지원</li> <li>· 민간 단체의 선구적·시행적 대책 마련이나 자살 다발 지역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원</li> </ul>	<p><b>11.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살대책을 더욱 더 추진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따돌림으로 힘들어 하는 아동의 자살 예방</li> <li>· 학생을 위한 지원 증진</li> <li>· SOS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추진</li> <li>· 아동을 위한 지원 증진</li> <li>· 청소년을 위한 지원 증진</li> <li>·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지원 증진</li> <li>· 지인 등을 위한 지원</li> </ul>	<p><b>12. 근무 문제에 대한 자살대책을 더욱 더 추진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시간 노동의 시정</li> <li>·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의 추진</li> <li>· 하리스멘트(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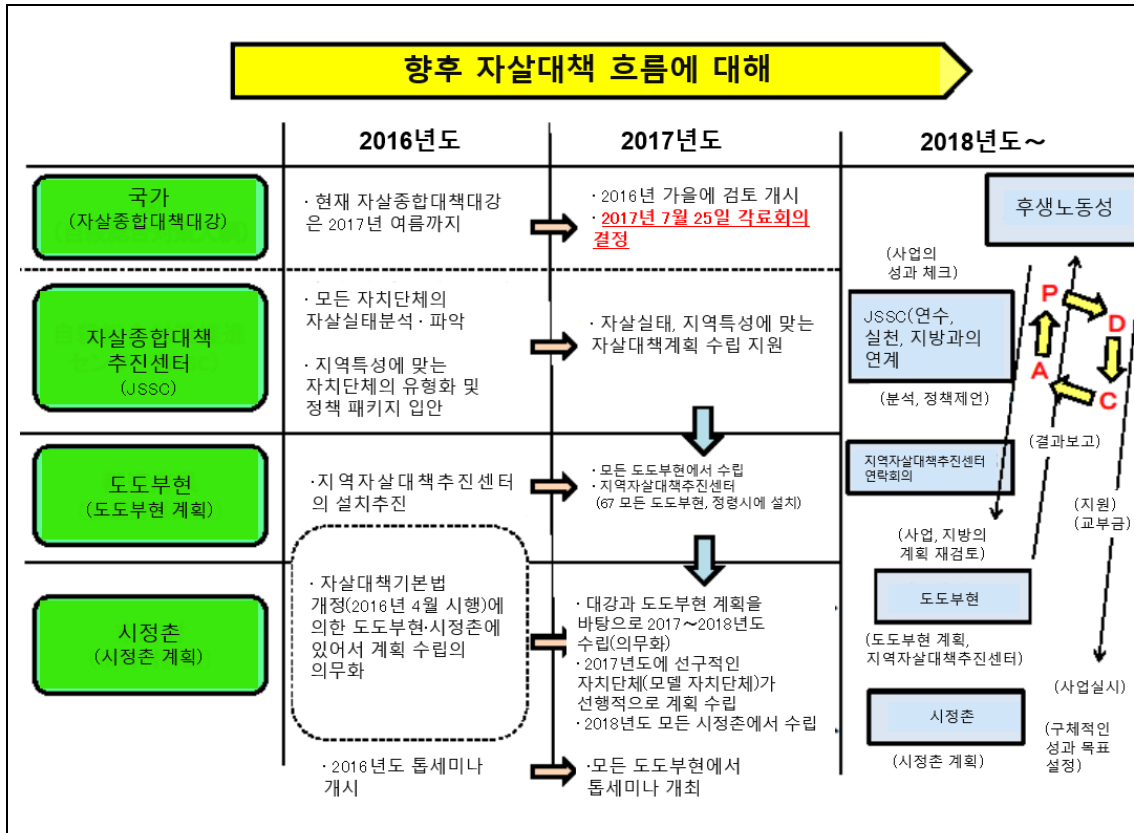
5) 사회 전체가 운영하는 PDCA 사이클

정부는 사회 전체가 함께 자살대책의 PDCA 사이클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정부는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에서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따른 자살실태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살대책 사업을 정리한 정책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제공받은 정책 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자살대책계획을 수립(PLAN)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DO)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국에서 실시된 정책 패키지 등의 성과를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수집 및 분석(CHECK)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패키지의 개선을 도모(ACT)하는 흐름입니다.

즉,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자살대책계획을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자살대책 PDCA 사이클을 운영함으로써 자살대책을 상시적으로 진화시키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표 9: 자살대책의 PDCA 에 대해서



I-4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자살대책

1) 국민 개개인과 가장 밀접한 행정 주체로서의 책임

지역 상황에 따른 시책을 정해서 실시할 책임이 있는 지방공공단체는 자살종합대책대강 및 지역 실태 등을 감안하여 지역자살대책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과 밀접한 행정 주체로서 정부와 연계하면서 지역의 각 주체와의 긴밀한 연계 및 협동 노력을 통해 자살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행정 수장이 책임자가 되어 부처 전체의 대책으로서 추진

행정의 최대 책무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자살대책은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행정 수장이 책임자로서 관여하여 지역자살대책계획의 수립 등 부처 전체의 대책으로서 지역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지침 「III-1 의사결정 체제를 만든다」 참조)

3)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전임부서 설치 및 전임직원 배치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시책과 연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뿐만 아니라 시정촌에서도 자살대책과 다른 시책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자살대책 전임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임부서를 설치하여 자살대책을 지역만들기로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살대책의 담당은 주민 개개인의 지원을 위해 현장을 잘 아는 보건사 등과 일반 직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시정촌과 도도부현 연계의 필요성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인 자살대책의 원점은 주민의 생활 현장입니다. 시정촌과 도도부현은 함께 주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의 실행 주체로서 각자가 강력하게 그리고 상호 연계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지역의 자살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시정촌의 주된 역할로서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홍보 및 계몽, 상담 지원 등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대책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도부현의 주된 역할로서는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시정촌에 대한 지역자살대책추진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계획수립의 기술적 지원 및 곤란 사례에 대한 연계 등) 외에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도도부현에 설치된 기관의 업무 실시, 광역적으로 계몽·캠페인 전개, 지역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체제 정비,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체제 정비 등, 해당 도도부현 전체 또는 2차 의료권 등 시정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책 및 사업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자살대책계획 수립의 의의

### II-1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2016 년에 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의 제 13 조에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자살종합대책대강 및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자살대책계획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13 조 도도부현은 자살종합대책대강 및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자살대책에 대한 계획(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2 시정촌은 자살종합대책대강 및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서 자살대책에 대한 계획(다음 조에서 「시정촌 자살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것은 개정 이전부터 자살대책기본법에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으로서 「지방공공단체는 기본 이념에 따라 자살대책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면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정한 것입니다.

자살대책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대책에 차이가 있어 거주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자살대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자살대책에 관한 지역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으로서 누구든지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자살대책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한 자살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살대책의 실효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 유의점1

- ▼ 지역자살대책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지역의 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복지지원계획 등 다른 관련 계획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인구 규모가 작은 시정촌은 근린 시정촌과 공동으로 광역적인 지역자살대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 지역자살대책계획은, 예를 들면 지역복지계획 또는 지역복지지원계획 등의 다른 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독적인 계획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계획 중 어떤 부분이 지역자살대책계획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중요한 것은 지역자살대책계획이 자살대책의 PDCA 사이클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것, 즉 「검증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 II-2 계획 수립의 이점

#### 1) 계획이라는 방법의 효과

자살대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의 부처 내 사업에 자살대책(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의 관점을 반영시키면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부처 안팎에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에 관한 시책은 광범하고도 다방면에 걸친 것이어서 특정 부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제반 행정영역에 걸친 시책을 정합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적 방법으로서의 자살대책계획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용 가능한 재무행정상의 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진 목표 연차까지, 노력하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 실현 수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수립 과정을 통해 관계 부서는 자살대책의 관점에서 각 시책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제반 행정 영역에 걸친 시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2) 역할 분담 등의 명확화

자살대책계획에서 각각의 시책에 대한 담당(과), 실시 시기, 목표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 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 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세와 구체적 목표, 진척 상황이 뚜렷하게 전달되므로 계몽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 3) 계획 수립을 통한 합의 형성

광범하고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정하기와 인원, 예산과 같은 재무행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획의 수립 과정은 지금까지 자살대책과 관련이 없는 듯이 보여온 분야에 대해 자살대책의 관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직원의 자살대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 결과적으로 부처 안에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 진행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관계 기관이나 주민 등이 참여함으로써 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한 계몽에도 이바지합니다.

## 4) 착실한 실행을 위한 담보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를 대외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담당 부서 및 관계 부서는 그 실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간 진척 상황이나 사후 달성 정도에 대해 확인하고 진척상황이 평가 대상이 됨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 5) 정부로부터의 지원

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자살대책계획 또는 시정촌 자살대책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 상황에 따른 자살대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하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제 14 조)에, 정부로서도 지방공공단체가 그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연 및 기타 원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 3 조 제 3 항).

### Ⅲ 자살대책계획 수립의 흐름

계획의 수립은 다음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관청을 아우르는 대책으로서 추진해 주세요.  
이때 「지역자살실태 프로파일」, 「사업현황조사 사례집」, 「지역자살대책의 정책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 1 의사결정 체제를 만든다

- 1) 행정 수장이 책임자가 된다
- 2) 관청 내 횡적인 체제를 정비한다
- 3) 널리 주민의 참가를 장려한다
- 4) 지역네트워크의 참가를 장려한다

#### 2 관계자 간에 인식을 공유한다

- 1) 지역의 자살실태를 공유한다

「지역자살실태 프로파일」 활용

- 2) 자살대책의 이념 등을 공유한다
- 3) 자살대책의 목표를 공유한다

#### 3 지역의 사회 자원을 파악한다

- 1) 관청내의 관련 사업을 파악한다

「사업현황조사 사례집」 활용

- 2)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파악한다

#### 4 자살대책계획을 결정한다

- 1) 계획의 전체 구성을 생각한다
- 2) 각 사업의 담당 및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한다
- 3) 검증 가능한 지표나 목표를 정한다

또한 2018년까지 수립을 염두에 두면, 2017년 중에 행정 수장을 책임자로 하는 관청 내 횡적인 체제의 정비(1-1, 2), 지역 내 네트워크 만들기(1-4), 관계자간 인식 공유(2)를 먼저 실시한 후에 지역의 사회자원 파악(3)을 가능한 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주민의 참가를 장려하고(1-3), 지역네트워크의 협력을 얻어 계획의 결정(4)을 향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Ⅲ-1 의사결정 체제를 만든다

- 1) 행정 수장이 책임자가 된다

시정촌장 또는 부(副)시정촌장을 책임자로 하는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추진 본부(가칭)」를 설치하여 행정 수장이 관여하는 형태의 자살대책 추진 체제를 정비한다.

행정의 최대 임무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자살대책은 분명히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책 그 자체입니다. 행정 수장이 책임자로서 관여하는 형태로 계획 수립을 포함한 지역자살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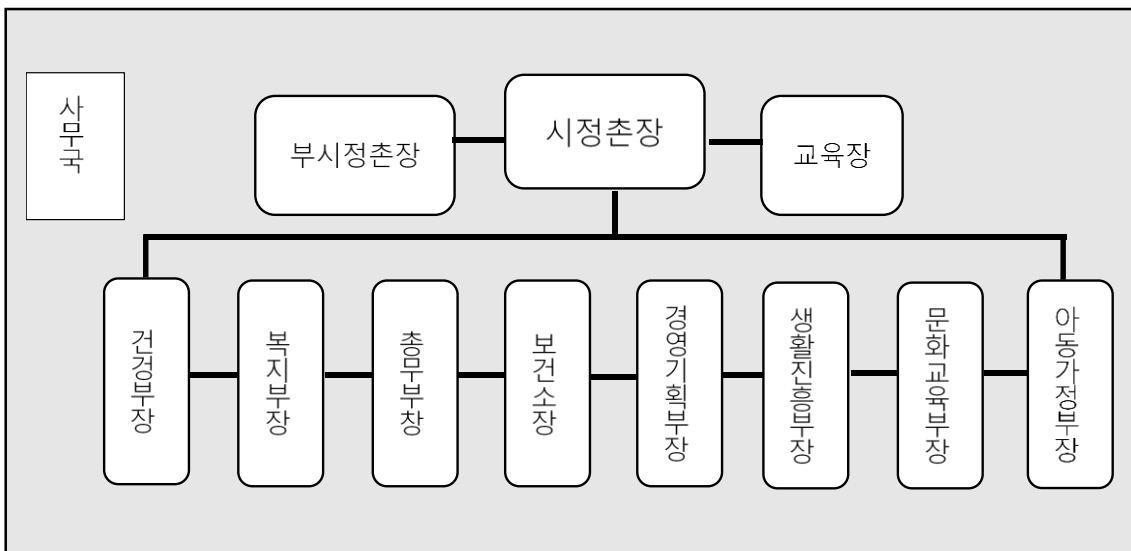
또한 그러한 체제의 명칭은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제 1 자살종합대책의 기본 이념」에 나오는 바와 같이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이라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예를 들면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추진 본부」로 한다면, 자살 대책이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살대책 = 우울증 대책」과 같은 발상이 관청 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면, 이렇게 체제의 명칭을 바꿈으로써 그런 발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청 내 횡적인 체제를 정비한다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추진 본부(가칭)」에 관청 내 관계 부서가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행정 전체로서의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자살대책기본법의 「제 2 조 기본 이념」에는 「자살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및 그 외의 관련 시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에 입각하여 지역에서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추진 본부(가칭)」에는 관청 내 폭넓은 분야의 관계 부서가 참여하여, 관청 내 횡적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그 한 예입니다.



**유의점 2**

- ▼ 행정 수장이 관여하는 관청 내 횡적 체제 정비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며, 관계 부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 수장이 지시를 내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 수장을 책임자로 하는 체제의 정비가 계획 수립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 행정 수장이 관여하는 관청 내 횡적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과 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행정 수장이 관여하는 관청 내 횡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우선 「관청을 아우르는 대책으로서 자살대책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계획수립사무국(자살대책 담당과)이 「결정에 근거한 작업」으로서 관계 부서에 협력을 호소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살대책(삶을 위한 지원)의 관점에서의 사업현황조사」와 「각 사업의 담당 및 실시 시기의 명확화」 등을 진행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 이러한 「조직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살대책의 담당(과)로서 계획수립에 대한 협력을 다른 부서에 호소해도 「우리 부서는 자살대책과는 관계없다」며 충분히 협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계획을 만들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가칭)」아래에 관계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계획 수립 워킹팀을 설치하여, 실무적인 논점 정리 등은 그 워킹팀이 수행하고, 최종적인 계획의 결정을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추진 본부(가칭)」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널리 주민의 참가를 장려한다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퍼블릭 코멘트나 타운 미팅을 실시하고,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검토모임을 마련하여 널리 주민의 참가를 장려한다.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를 하거나, 계획의 골자 혹은 초안이 마련된 단계에서 퍼블릭 코멘트와 타운 미팅을 갖는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식 조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패키지」를 참조

또한 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검토모임을 마련하여 행정과 주민 등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살대책추진에 대한 주민 등의 주체적인 참여를 얻는데 효과적입니다.

#### 4) 지역네트워크의 참가를 장려한다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자살대책의 지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등의 요구를 파악함과 동시에 참여 단체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임 등을 통해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여 널리 지역네트워크의 참가를 장려한다.

자살대책에 있어서는 의료, 보건, 생활, 교육, 노동 등에 관련된 상담기관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의 네트워크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역에 유사한 네트워크가 없다면 이번 계획 수립을 기회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칭을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네트워크」, 「생명을 지원하는 상담 지원 네트워크」,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협의회」 등으로 한다면 활동 취지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때, 지역의 유사한 네트워크(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모임, 생활근공자 자립지원 및 아동 학대방지에 관한 네트워크 등)의 협력을 얻어 새롭게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네트워크에 자살대책의 관점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정, 촌의 예】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지역포괄지원센터, 보건소, 진료소, NPO 법인, 사회복지법인, 교육위원회, 경찰서, 소방서, 상공회, 변호사회, 농협, 노인 클럽, 부녀회, 자치회, 지역 자살대책추진센터 등

#### 【시, 구의 예】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지역포괄지원센터,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병원, NPO 법인, 사회복지법인, 교육위원회, 경찰서, 소방서, 노동기준감독서, 헬로 워크(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산업보건센터, 상공회의소, 변호사회, 철도회사, 지역자살대책추진센터 등

#### 유의점3

▼ 지역의 자살대책의 경우, 계획 수립 이상으로 그 실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의 프로세스에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들을 끌어들이 「이것은 자신들이 관여하여 세운 계획」이라는 당사자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듦으로써 지역자살대책의 담당자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 특히, 자살대책을 「지역만들기」로서 전개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실무적인 협동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어떠한 형태로 계획 수립에 관여하게 하여(단순히 의견을 듣는데 그친다 할지라도),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에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지역네트워크가 아직 없고 또한 계획 수립 전에 만들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계획을 결정 및 실행하는 타이밍에 맞춰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III-2 관계자간에 인식을 공유한다

#### 1) 지역의 자살실태를 공유한다

시정촌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자살은 대부분 궁지에 내몰린 결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아울러 해당 시정촌의 자살실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자살종합대책대강에는 「자살의 현황에 대한 기본 인식」으로서 「자살은 대부분 궁지에 내몰린 결과로서의 죽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대책 추진의 대전제로서 지역 관계자가 이러한 기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국의 모든 시정촌에 제공하는 「지역자살실태 프로파일」을 관계자간에 공유하여, 자신들의 자치단체에서 어떤 연령대나 성별, 직업 등의 주민(예를 들면 「40-59세의 남성으로 무직이며 혼자 사는 사람」, 「60대 이상의 여성으로 동거인이 있는 사람」, 「20-39세의 남성으로 무직이며 혼자 사는 사람」 등)의 자살이 많은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역의 자살실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은 유가족 등의 수는 자살로 죽은 사람의 몇 배에 이른다는 것도 함께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점 4

▼ 인구 규모가 작고 자살자 수가 적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자살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 인구 규모가 크거나 면적이 큰 자치단체는 시정촌 단위의 통계로는 범위가 너무 커서 지역적인 특징이 묻혀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통계법 제 33 조 제 1 호의 규정에 기초하여 「인구동태조사」의 사망소표(小票)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소지역에 따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자살대책의 정책 패키지」 참조

#### 2) 자살대책의 이념 등을 공유한다

시정촌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지역자살실태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야 할지, 자살대책의 기본 이념과 기본 방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다음의 4 가지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자살대책이란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다
- ② 자살대책 추진은 「관계 부서(기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
- ③ 자살대책추진은 「지역 안전망의 구축」이기도 하다
- ④ 자살대책 추진에서 「행정 수장의 리더쉽」은 빼놓을 수 없다

이 사항들은 2016년부터 도도부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시정촌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지역자살대책의 리더쉽 세미나」에서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유의점5**

▼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지원책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자살은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해진 결과로서 일어난다. 거꾸로 생각하면, 자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 둔다면 그것으로 지역의 다른 모든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살대책은 지역만들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이며,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야 할 사람은 리더 여러분들밖에 없다」 ( 「지역자살대책의 리더쉽 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 행정 수장이 「지역자살대책의 리더쉽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제를 정비하기 전 또는 정비할 때(예를 들면, 「본부」의 최초의 모임 시) 행정 수장을 포함한 관리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수회에 대해서는 「정책 패키지」를 참조

▼ 행정 수장의 이해를 면밀하게 구하면서 행정 수장이 관여하는 관청 내 횡적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체제가 계획 수립의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3) 자살대책의 목표를 공유한다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자살대책 수치목표」에 나온대로 일본의 자살대책이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이며, 정부의 당면 목표인 「2026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2015년과 비교해 30%이상 감소시킨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다.

각각의 시정촌에서도 최종 목표로서는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지역」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만, 당면한 수치목표로서는 정부가 「2026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2015년 대비 30%이상 감소」, 자살 사망률(이하 「자살률」이라고 한다.)을 13.0 이하로 줄이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자살률이 전국 수치보다 높은 경우, 정부보다 높게 감소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인구 규모가 작고 자살자 수가 적은 시정촌의 경우에는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에 시정촌명을 넣는다)」를 그대로 목표로 삼거나 또는 다년간의 수치 목표(예를 들면, 최근 5년간의 자살자 수가 ○명인데, 향후 5년간은 자살자 수를 △명 이하로 한다 등)를 내걸어도 좋습니다.

덧붙여 수치목표는 자살종합대책대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살률 뿐만 아니라 자살자 수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지역별 장래인구추산」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본 지침 「III-4-3 검증 가능한 지표와 목표를 정한다」를 참조해 주세요.

### III-3 지역의 사회 자원을 파악한다

#### 1) 관청 내 관련 사업을 파악한다

계획 수립 시에는, 관청 내 관련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업현황조사」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살대책이란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사업을 최대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청 내의 관련 사업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사업현황조사」입니다.

「사업현황조사 사례집」을 보면 뜻밖의 사업에서 자살대책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는 등, 보다 충실한 계획을 만드는 데 참고가 됩니다. 반드시 「사업현황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수립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현황조사의 진행 방식》

##### ▼A 안: 가장 꼼꼼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장점 : 관청내의 「삶을 위한 지원」 관련 사업을 최대한 자살대책에 활용할 수 있다.

단점 :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

① 「●● 연도 주요 시책의 개요」나 「●● 연도 주요 시책의 성과」 등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시정촌의 전체 사업 리스트를 작성한다.

② 「사업현황조사 사례집」을 참고하여 전체 사업 리스트 중, 「삶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또는 관련될 수 있는(관련 없는 것 이외의) 사업을 찾아낸다. 1개의 사업 속에 「복수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사업 하나 하나를 최대한 자살대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세분화하고 조사한다.

#### 【예 1: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사업】

⇒ 「자립상담지원사업」, 「주거확보금부금지급사업」, 「가계상담지원사업」,  
「아동학습지원사업」, 「공동숙박장소제공사업」 등

#### 【예 2: 정신보건사업】

⇒ 「정신장애인의 상담기회 제공」,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의식 계몽」,  
「근란 사례에 대한 개별 지원」,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강연회·가족 교류회」 등

③ 조사한 사업(이하 「업무」를 포함한다.)에 자살대책의 관점을 추가한 「사업안」을 구상한다. 이때 「사업현황조사 사례집」에 수록된 유사 사업을 참고하면 좋다.

【예 1: 도서관 관리사업】 도서관은 평상시부터 활자에 친숙한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포스터나 패널 등을 전시하거나 자살 대책과 상담회 등의 홍보 계몽의 장소로서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살 대책에 도움이 되는 「안식처(특히 아이를 대상으로 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2: 세금체납 징수사업】 자살의 배경에는 생활고나 빚 등의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을 체납 중인 사람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품고 자살 위험을 떠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원이 체납자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상담회 등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 징수원에게 자살 대책 연수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 ④ 자살대책의 관점을 추가한 사업안에 대해서 각 사업의 담당자와 사업안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한다. 아울러 파악이 누락된 「삶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 ⑤ 계획에 담을 최종 표현을 확정한다.

▼B 안: A 안의 ①과 ②의 작업을 단축시킨 방식입니다.

장점 : 수고를 적게 들이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찾아낼 수 있다.

단점 : 각 부서의 「이해도의 차이」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 차이가 난다.

- ① 「사업현황조사 사례집」을 관청 내 각 부서와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하면서 「삶을 위한 지원」과 관련되거나 관련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찾는다.
- ② 그 다음은 A 안의 ③ 이하와 같다.

▼C 안: A 안의 ①~③의 작업을 단축시킨 방식입니다.

장점 : 수고를 들이지 않고 일단 사업현황조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점 : 각 부서에게 맡기게 되면 거의 사업을 찾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 ① 「사업현황조사 사례집」을 관청 내 각 부서와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이를 참고로 하여 자살대책의 관점을 추가한 「사업안」을 고안한다.
- ② 그 다음은 A 안의 ④ 이하와 같다.

유의점 6

- ▼ 관청 전체적으로(적어도 관리직에게) 자살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두면 관련 사업의 파악 작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행정 수장이 관여하는 관청 내 횡적인 체제에서 「실천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 사업의 파악을 실시」 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정을 따르는 형태로 작업을 하면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사업의 파악 작업은 다른 부서와의 정보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되어 서로의 사업 내용에 관한 이해 촉진으로 이어집니다. 관청 내 관계자와의 「얼굴을 마주하는 연계 관계」의 재구축 및 재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 ▼ 「우리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관계 부서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이해를 구하는 등, 관련 사업 파악 작업은 시간을 들여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관청내의 다양한 사업을 「삶을 지원하는 대책」로서 자리매김시키고 폭넓게 계획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관청을 아우르는 자살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위한 지원」을 총동원하여 만든 계획은 자살 이외의 문제 해결에도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파악한다

지역의 민간단체 등의 「삶을 위한 지원」 관련 활동을 파악한다. 그 중 자살대책의 관점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다.

지역의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도 폭넓게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관청내의 관계 부서에 「삶을 위한 지원」 관련 사업을 문의할 때, 각 관계 부서와 연결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안에서 「계획에 포함되는 단체」와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포함시키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네트워크 등에 의뢰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파악된 범위의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계획에 일단 포함시키고, 그 후 만약 새롭게 파악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이 있다면 이들은 계획의 재검토 시기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 등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폭넓게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III-4 자살대책계획을 결정한다

#### 1) 계획의 전체 구성을 고려한다

본 지침의 「IV 계획에 담을 내용을 결정한다」를 참고하여 지역의 자살실태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체 구성을 생각한다. 이때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의 강점(예를 들면, 주민에 의한 지역 활동이 활발하다) 「관련 시책의 네트워크가 기능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등의 관점도 중요시한다.

계획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 수장이 관여하는 관청 내 행정 체제의 책임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자살종합대책대강도 최종적으로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2) 각 사업의 담당 및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한다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 각각 사업의 담당(과)를 명시한다. 또한 각 사업의 실시 시기도 명확하게 한다(시기의 범위를 설정해도 좋다).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자살종합대책의 당면 중점 시책」에도 모든 사업의 담당부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담당부처의 어느 과가 담당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정촌의 계획의 경우에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과 또는 팀이 담당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자 담당한 사업에 책임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의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의점 7

▼ 계획의 각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 또는 팀)과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한 후, 자살대책 담당이 실시하는 주요 업무는 각 사업의 진척 관리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계획에 포함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일일이 의뢰하지 않아도 진척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검증 가능한 지표와 목표를 정한다

검증 가능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 가능한 한 평가지표와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또한 반드시 정해야 하는 평가지표와 목표에 대해서는 본 지침서의 「IV 계획에 담을 내용을 결정한다」를 참고한다.

계획 전체의 목표인 「자살대책의 수치목표」와는 별도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평가지표와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특히 시정촌 단위의 자살대책의 경우, 각 사업의 실시가 자살 감소라는 「결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살의 증감이라는 「결과」가 아닌 자살 감소를 위한 수단(사업)으로서 적정한지 그 「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대책에 관한 계몽 캠페인을 개최해도 곧바로 자살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참가자 수, 참가비율」 또는 「참가자 설문지 결과」 등에 기초하여 그 이벤트가 자살을 줄이기 위한 활동 = 과정으로서 적당한 내용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문지 양식은 「정책 패키지」를 참조)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자살대책에 특화된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식 조사를 포함), 그 안에 자살대책의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질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 패키지」를 참조

## IV 계획에 담을 내용을 결정한다

### IV-1 계획의 명칭을 정한다

「생명을 지원하는 ●● 자살대책 행동 계획(●●는 시정촌명)」 등 계획의 명칭에 있어서도 「생명을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알기 쉽게 밝혀두면 계획의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얻기 쉬워집니다.

정부의 자살종합대책대강에 있는 같은 방식으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 실현을 목표로~」와 같은 부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IV-2 계획의 구성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성 차례나 항목 명칭은 하나의 예이며, 다음과 똑같은 필요는 없습니다. (괄호안은 보충 설명)

- 1) 들어가면서(시정촌장의 메시지를 직접 주민에게 전하기 위해)
- 2) 계획 수립의 취지 등
  - 2-1) 취지(자살대책의 기본 방침, 즉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추진」, 「관련 시책과 유기적인 연계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대응 단계에 따른 각 레벨에 맞춘 대책의 효과적인 연동」, 「실천과 계몽을 양대 축으로 추진」, 「관계자 역할의 명확화, 관계자에 의한 연계 및 협동의 추진」을 바탕으로 자살대책을 관청을 아우르는 대책으로서 추진해 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 등)
  - 2-2) 계획의 위상 정립(자살대책기본법에 기초한 계획인 것과 다른 개별 계획과의 관련성 등)
  - 2-3) 계획의 기간(자살종합대책대강에 입각하여 대체로 5년 이내로 한다)
  - 2-4) 계획의 수치목표(정부 목표, 즉 「2026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2015년 대비 30%이상 감소시킨다」에 입각하여 적절히 설정)
- 3) ●●에서의 자살의 특징(「지역자살실태 프로파일」 등을 활용하여 기재)
  - 3-1) 전국과 비교
  - 3-2) 과거와 비교(연별 추이)
  - 3-3) 대책의 우선적 대상 파악(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망사례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 지원 대상을 정하기 쉽게 하기 위해)
    - ※ 다음을 지역의 필요성과 실시 가능성에 따라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주민의식조사나 관계 단체에 대한 설문지 결과 등
    - 소지역별 분석(사망소표 등을 이용)
    - 자살시도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 등

·자살관련 상담 건수 등

- 4) 지금까지의 대책과 평가(이 항목은 차기 계획부터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5)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마련(각 사업의 담당과 실시 시기를 명시한다)
  - 5-1) 기본 시책  
⇒ 「지역자살대책의 정책 패키지」에서 전국적인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는 다음의 5 항목(기본 패키지)에 대해서, 정책패키지에 소개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
    - ① 지역 내 네트워크의 강화
    - ② 자살대책 지원 인재 육성
    - ③ 주민에 대한 계몽과 홍보
    - ④ 삶의 촉진 요인 지원
    - ⑤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SOS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5-2) 중점 시책  
⇒ 「지역자살실태 프로파일」의 추천 패키지를 바탕으로 지역자살대책의 정책 패키지로부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중점 패키지: 예를 들면 「아동 및 젊은층 대책」, 「고령자 대책」 등) 항목을 몇 가지 선택하여, 정책 패키지에 소개된 사례 등을 참고로 작성
  - 5-3) 삶을 위한 지원 관련 시책  
⇒ 「사업현황조사」 등에 따라 파악된 「삶을 위한 지원」 관련 사업을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중점 시책의 항목에 맞춰서 일람 게재(「사업현황조사 사례집」 참조)
- 6) 자살대책의 추진 체제 등
  - 6-1) 자살대책 조직 관계도(추진 본부와 네트워크 등의 관계성 정리)
  - 6-2) ●●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가칭)
  - 6-3) ●●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 네트워크(가칭)
  - 6-4) 자살대책 담당과 및 담당자(「계획 수립」 사무국)
- 7) 참고 자료(자살대책기본법, 자살종합대책대강 등)

IV-3 평가지표 등을 포함시킨다

지역의 자살대책을 조금씩이라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적절하게 평가 및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지표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물론 독자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평가지표를 세우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도 실시 여부, 실시 내용을 기록하여 평가의 재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치목표》

#### 1) 자살대책의 수치목표에 대해서

##### ▼ 자살 사망률, 자살자 수

⇒ 본 지침서 「III-2 관계자 간에 인식을 공유한다」의 「3 자살대책의 목표를 공유한다」를 참조

### 《평가지표》

#### 1) 기본 시책 「자살대책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에 대해서

##### ▼ 5년 후까지 자치단체 직원(관리직과 일반직 각각)의 자살대책 연수 수강비율

⇒ 양적 목표 예: 70% 이상의 관리직 및 일반직이 수강

⇒ 질적 목표 예: 70% 이상의 설문지 답변자가 「참가해서 좋았다」, 「자살대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평가

##### ▼ 5년 후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강연 참가비율

⇒ 양적 목표 예: 0.5% 이상 및 200명 이상의 주민이 수강 및 참가

⇒ 질적 목표 예: 70% 이상의 설문지 답변자가 「참가해서 좋았다」, 「자살대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평가

#### 2) 기본 시책 「주민에 대한 계몽과 홍보」에 대해서

##### ▼ 「자살예방 주간」과 「자살대책강화의 달」에 대한 계몽

▼ 「요리소이(가까이 다가감) 핫라인」이나 「마음건강상담(전국 공통) 다이얼」등 지역의 상담 기관에 대한 계몽

⇒ 예: 주민의 약 3명 중 2명 이상이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주의: 주민의식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시키기 어려움)

##### ▼ 「게이트키퍼」에 대한 계몽

⇒ 예: 주민의 약 3명 중 1명 이상이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주의: 주민의식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포함시키기 어려움)

#### 3) 기본 시책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SOS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 ▼ 5년 후까지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SOS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의 실시 비율

⇒ 예: 모든 공립초·중학교에서 수업을 1회 이상 실시

#### 4) 중점 시책 = 지역자살대책의 「중점 패키지」에 대해서

중점 시책에 대해서는 각 사업의 담당과 및 실시 시기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평가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시 여부/실시 내용 기록》

#### 1) 기본 시책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 ▼ 언제 어떤 활동을 실시했는지 기록

#### 2) 기본 시책 「삶의 촉진요인 지원」에 대해서

##### ▼ 상담회 개최 결과와 상담회 후의 후속조치 내용 등을 기록

3) 삶을 위한 지원 관련 시책에 대해서 사업 일람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해, 각각의 실시 여부와 실시 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각 사업 담당자로부터 「실시 후 느낀 점」이나 「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살 위험군에 대한 개별 지원」과 「유가족 등의 자조모임 운영」과 같은 사업의 경우, 지원 건 수나 참가자 수 등의 양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 V 계획의 추진 상황의 확인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 후 관청 차원에서 주민과의 협동 하에 계획에 따른 대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 추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파악 및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V-1 계획 추진의 책임 주체

계획은 시정촌장 또는 부시정촌장을 책임자로 하는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가칭)」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세요.

### V-2 추진 상황의 파악 및 확인

계획 상의 각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생명을 지원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가칭)」가 매년 또는 적절한 시기에 파악 및 확인하세요.

### V-3 추진 상황의 평가 및 공표

확인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와 지역자살대책추진센터의 협력을 얻어 적절한 시기에 평가를 실시하여, 예를 들어 매년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된 사업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여 공표하거나 관계 기관에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V-4 지역자살대책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협력

정부는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진적인 대책방법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수집 및 집약하여 지역자살대책의 정책 패키지의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갱신하고, 자살대책에 관한 최신 및 최선의 정보를 전국의 자치단체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자치단체의 자살대책과 관련하여 대책 상황 등 조사를 실시할 때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V-5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살 상황은 다양한 사회 환경 변화 등에 의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에는 계획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십시오.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대로 대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자살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의 「삶을 위한 지원」 과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을 총동원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한 지역자살대책 계획수립은 이를 면밀하게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자살대책 기반을 강화하며, 만일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경우, 지역의 자살실태나 자살대책 과제의 변화 등, 그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힌 후 사업을 계획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